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511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15.1.28공포)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치매환자 가족 상담·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조호정보 제공,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상담,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구성운영 등을 포함함. (안제3조의2)

나. 중앙치매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6조의2)

다.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8,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신설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6조의2,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프로그램)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조호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구성·운영
5.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2(중앙치매센터의 위탁)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명세
2. 운영계획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으려는 자가 별표 1의 설치·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설치·운영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의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3 (광역치매센터의 위탁) ①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으려는 자가 별표 2의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설치·운영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9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위탁)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명세
2. 운영계획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가 별표 3의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설치·운영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치매센터 등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중앙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의료기관 또는 기관·법인·단체가 각각 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위탁기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6조의2제1항 각 호,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 <신설>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 프로그램)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조호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구성·운영 5.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앙치매센터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치매센터로 지정하는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치매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는 것 2. 전국 치매관리사업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는 것 3. 치매 관련 시설·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추는 것 ② 중앙치매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치매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명세 2. 중앙치매센터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종합병원을 중앙치매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치매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치매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이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2 <신설>	제6조의2(중앙치매센터의 위탁) ①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명세 2. 운영계획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으려는 자가 별표 1의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설치·운영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의2 <신설>	제7조의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3 <신설>	제7조의3 (광역치매센터의 위탁) ①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으려는 자가 별표 2의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설치·운영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9조 <신설>	제9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신설>	제10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위탁)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명세 2. 운영계획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가 별표 3의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설치·운영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	---

[별표 1]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치매관리법 제16조 관련)

I. 설치기준

1. 시설기준

- 가. 중앙치매센터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세미나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중앙치매센터를 위탁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직제기준

- 가. 치매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치매센터장, 부센터장을 두고 연구, 교육·홍보, 협력사업 등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 1) 중앙치매센터장 : 1명을 둔다. 다만, 중앙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2일(1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 2) 부센터장 : 상근으로 1명을 둘 수 있다.
- 3) 팀장 및 팀원 : 각 팀의 실무관리를 총괄하는 팀장 1인을 둘 수 있다. 팀원은 15인 내외로 둘 수 있다.

나. 자격기준

- 1) 중앙치매센터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노인보건복지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 라)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자

- 2) 부센터장 : 1)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노인보건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3) 팀장 : 치매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노인보건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II. 운영기준

1. 중앙치매센터장은 광역치매센터 업무의 총괄·조정 및 기술제공,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며 치매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광역치매센터와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중앙치매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실적, 예·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중앙치매센터 운영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운영할 것
 - 나.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 둘 것
 -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 2) 중앙치매센터장, 부센터장, 팀장 및 팀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 3)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최근 3년 동안의 치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별표 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치매관리법 제16조의2 관련)

I.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광역치매센터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세미나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직제기준

가.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광역치매센터장, 사무국장을 두고, 정책기획, 교육홍보, 기술지원, 자원연계 등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광역치매센터장 : 1명을 둔다. 다만,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2일(1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 : 상근으로 사무국장 1명을 둔다.

3) 팀원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팀원을 5인 이상 둔다. 다만, 광역자치단체별 치매관련 현황(치매환자 수, 치매지원센터 수, 치매관련 시설 수 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자격기준

1) 광역치매센터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보건복지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라)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자

- 2) 사무국장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노인보건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II. 운영기준

1. 광역치매센터장은 중앙치매센터 및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 및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사회 치매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지역사회 치매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광역치매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실적, 예·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광역치매센터 운영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운영할 것
 - 나.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 둘 것
 -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 2) 광역치매센터장, 사무국장, 팀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 3)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최근 3년 동안의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별표 3]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치매관리법 제17조의2 관련)

I.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치매상담전화센터에는 다음과 같이 상담 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공간과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할 것
- 2) 효과적인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를 갖추어 것

나.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기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 1) 치매상담전화센터장 : 1명을 둔다. 다만,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2일(1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 2) 상담팀장 : 상근으로 1명을 둘 수 있다.
- 3) 전문상담원 :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기술,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부담 경감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 제공
- 4) 일반상담원 : 치매 발병원인, 증상, 예방 및 치료, 정부정책 및 지원서비스 등 정보 제공
- 5) 행정(조)원 :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사항 지원

나. 자격기준

- 1) 치매상담전화센터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보건복지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 라) 상담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자

- 2) 상담팀장 : 1)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노인보건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3) 전문상담원 : 1)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노인보건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4) 일반상담원 : 1)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노인보건복지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자
- 5) 행정(조)원 : 고졸 또는 동등학력 이상 소지자로 당해 분야 경력자

다. 상담원 채용 시 치매 전문상담 소양함양을 위하여 2개월 이내 범위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II. 운영기준

1. 치매상담센터장은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월별로 상담실적을 정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주요 정책제언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를 수집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치매상담전화센터장은 치매상담 계획 및 실적, 예·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치매상담전화센터 운영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운영할 것
 - 나.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 둘 것
 -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 2) 치매상담전화센터장, 상담팀장, 상담원, 행정(조)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 3)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최근 3년 동안의 치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중앙치매센터 위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의료기관	명 칭	개설허가일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직위
	전 화 번 호	전자우편 주소

「치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를 위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1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명세 1부 2.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기관	명 칭	개설허가일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직위	
	전 화 번 호	전자우편 주 소	

「치매관리법」 제17조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1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명세 1부 2.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	--	------------